

# 日本「仲裁法試案」의 特徵과 問題點

松浦 駿\*

## I. 「仲裁法試案」의 作成에 관해서

「仲裁法試案」은 仲裁法研究會가 作成한 것으로 1989년 1월 15일號(417號)NBL誌上에 公表되었습니다. 그리고 同志 418호以後 逐條解說과 參考資料를 連載하였습니다. 그 連載가 完結된 직후에 同年 5월 20일 明治大學에서 개최된 日本民事訴訟法學會의 심포지움에서 다루어져 활발히 討議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日本民事訴訟法은 1890년에 1877년 制定의 獨逸民事訴訟法을繼受한 것인데 그立案에 즈음하여 第一편에서 第六편까지는 상당히 慎重하게 檢討한 후에立法했다고 할 수 있지만 第七편 公示催告節次와 第八편 仲裁節次의 部分은立法過程의最後段階에서 卽席으로 獨逸民事訴訟法의 該當編을 翻譯하여 追加되었던 것이고<sup>1)</sup>, 또한 그 후 百年以上이 지났는데도 實質的인 改正은 全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sup>2)</sup>.

다른 한편 仲裁를 둘러싼 環境의 變化에는 특히 근년에 와서 顯著한 것이 있으며 仲裁法改正의 機運은 점점 높아 가고 있습니다. 즉 國際去來, 國際交流의 急激한 進展과 國際商事紛爭의 增加, 紛爭의 增大와 多樣化에 따른 ADR의 評價 내지는 再評價의 움직임, 仲裁에 관한 多國間 및 二國間 條約의 發達, UNCITRAL仲裁規則(1976)과 模範法(1985)의 制定, 世界各國에 있어서의 仲裁法改正의 움직임 등을 指摘할 수 있습니다.<sup>3)</sup>

日本에서도 매우 오래된 民事訴訟法第八편 仲裁節次의 全面改正의 要求가 강하지만 法制審議會民事訴訟法部會로서는 우선 民事訴訟節次(判決節次)의 改正을 다루기로 하고 1995년까지 審議를 마치기로 하고 現在 審議중에 있습니다.<sup>4)</sup>

그 후의 豫定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仲裁를 다룰 可能性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最近 通產省主導로 「國際商事仲裁시스템 高度化研究會」(會長, 三ヶ月章東大名譽教授)가

\* 日本 名古屋大學 教授, 法學博士

1) 兼子一「民事訴訟法の制定」民事法研究第二卷7면.

2) 松浦駿「西トツにおける仲裁」法時54권8호(1982)47면·小島武司=高柔昭編·注解仲裁法(1988)546면〔松浦〕 참조.

3) 「シンホシウム・仲裁」民訴雜誌36號(1990)84면 이하〔松浦·報告〕 참조.

4) 柳田幸三「民事訴訟手續の見直し作業の開始に當たつて」N B L 455호(1990)6 이하 참조

發足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仲裁研究會가 時期에 결맞게 民事訴訟法第八편 仲裁節次의 全面的 改正草案으로서 提案한 것이 「仲裁法試案」입니다.

여기서 仲裁法研究會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本研究會는 故菊井維大東大名譽教授를 中心으로 1979년에 發足하였습니다. 民事訴訟法·商法·國際私法學者와 약간의 實務家로 構成된 約20名의 研究그룹입니다.<sup>5)</sup> 發足當初에는 鈴木竹雄東大名譽教授도 멤바로 委嘱하여 指導를 받았습니다. 대략 두달에 한번꼴로 東京에서 研究會를 열어 왔는데 最近에는 세달에 한번 정도의 間隔두고 있습니다. 目下 아시아諸國의 仲裁법과 仲裁規則등의 研究에 重點을 두고 있고 그외의 主要國의 최근 仲裁立法이나 常設仲裁機關의 새로운 仲裁規則改正등에도 注目하고 있습니다. 仲裁研究會의 멤바가 個別의으로 仲裁에 관한 論文등을 發表한 것은 일일히 세어 볼 수 없지만 研究會自體로 公表한 綜合的인 業績으로서는 1982년 「仲裁制度の 總合的研究」法律時報54권8호, 1981년 菊井維大=松浦馨「仲裁邦言文獻目錄」法律時報53권2호, 1982년 菊井=松浦「仲裁邦言文獻目錄·追補」法律時報54권8호, 1989년 「仲裁法試案とその 解說」NBL417호以下등이 있습니다. 이 「仲裁法試案과 그 解說」은 試案의 英獨佛譯을 추가하고 全體적으로 若干의 補正을 한 후에 近日中에 單行本으로 간행할 豫定입니다. 아울러 本研究會는 1978년以來 現在까지 每年 多額의 助成金을 末廷財團으로부터 받아 運營해 来습니다.<sup>6)</sup>

## II. 「仲裁法試案」의 特徵

여기서의 「仲裁法試案」의 特徵이라 함은 주로 現行 日本仲裁법과 對比하여 그와 다른 점이라는 意味이지만 本試案의 起案에 있어서는 UNCITRAL模範法이나 仲裁規則, 英美獨佛 其他의 立法例도를 참작했기 때문에 適宜 그 것과의 比較에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5) 그 멤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小山昇 北海道大名譽教授〔代表〕・池原季雄 上智大教授・三ヶ月草 東京大名譽教授・宮脇幸彦 前學習院大教授・鴻常夫 東京大名譽教授・松浦馨 名古屋大教授・澤木敬郎立教大教授・澤田壽夫 上智大教授・谷口安平 京都大教授・飯塚重男 上智大教授・岩崎一生 名古屋大教授・小島武司 中央大教授・青山善充 東京大教授・河野正憲東北大教授・高橋宏志 東京大教授・上野泰男 關西大教授・道垣内政人 東京大助教授・具賴幸雄 名古屋大助教授・中野俊一郎 神戶大助教授・小川健・服部弘 國際商事仲裁協會仲裁部長・谷本裕範 日本海運集會所常務理事.

6) 아울러 日本證券獎學財團으로부터 1979년까지 助成金을 받았다.

점도 指摘할 생각입니다.<sup>7)</sup>

### 1. 仲裁에 대한 法院의 規制 · 監督과 後見 · 援助에 관해서

法院의 規制 · 監督이란 法院이 國家의 法律의 정당한 解釋 · 適用을 確保하기위해 仲裁에 介入하는 것이고 英國이나 英國法系의 國家에서 행하여진 소위 스펜알케이스制度 등이 그 뚜렷한例이지만, 近年에는 이와 같이 엄격한 法院의 規制 · 監督이 緩和 내지는 廢止되어 가고 있는 것이一般的 傾向입니다.<sup>8)</sup> UNCITRAL模範법도 5조에서「이 法律이 정하는 事項에 관해서는 法院은 이 法律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介入해서는 안된다.」라고 規定하여 쓸데없이 法院이 規制 · 監督하려 나와서는 안된다는 原則을 宣言하고 있습니다. 단 日本法은 원래 英國법과 같은 積極的 介入의 態度와는 無緣하기 때문에 模範法5조의 趣旨는 오히려 當然하고 明白한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試案」에서도 그 趣旨의 名文의 規定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外國人의 立場에서 본다면 介入禁止의 明規가 있는 편이 安心하고 日本의 仲裁를 利用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sup>9)</sup>

다른 한편 法院의 後見 · 援助에 관해서는 이를 促進한다는 方向에서 注目할만한 改正이 推進되고 있습니다.

(1) 管轄 – 어느 法院이 擔當하는가 現行民訴 805조는 仲裁契約에서 合意하면 그合意한 地法 또는 簡法, 合意가 없으면 請求를 裁判上 主張하는 경우 管轄을 갖게 되는地法 · 簡法(訴訟管轄據據主義). 그러한 法院이 複數이면 擔當者 또는 仲裁人이 最初로 關係하게 된 法院이 管轄한다(管轄固定主義)라는 立場이다.

이에 대해 「試案」3조는 原則적으로 管轄固定主義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個別事項에 가장 密接한 地를 골라 管轄法院을 정하고 있고 그 경우 現行法이 認定하지 않는 仲裁地를 重視하고 있는 것이 特徵입니다(仲裁地中心主義). 또한 이 管轄의 規定을 專屬的

7) 전술한 바와 같이 日本仲裁法은 1890년에 당시의 獨逸仲裁法을 翻譯的으로 전수한 것이고 制定當時에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거의 同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후 백년이 지난 오늘 날에는 兩者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끔 되었다. 왜냐하면 獨逸에서는 그 후 그때 그 때의 國內的 또는 國際的 要請에 즉응하여 두차 規程의 改正이 있었는데 日本에서는 일세기 사이에 실질적인 改正是 全無했기 때문이다. 현행 日本仲裁法과의 대비에서 본 獨逸仲裁法의 特徵에 관해서는 小島=古柔·後掲(주2)547頁이하〔松浦〕參照. 아울러 獨逸 仲裁法의 1986년 改正에 관해서는 上野泰男·仲裁法 1986년 改正(1991년 3월·國際商事仲裁協會)참조.

8) 小島=高尚·前掲(注2)499面이하〔谷口〕·松浦型「東南アジア仲裁の 特徵と 問題點」名大法正論集法正論集 141호(1992)111面이하 참조.

9) 「シンジウム. 仲裁」前掲(注3)103面〔青山〕.

이라고 규정하고 合意管轄의 餘他를 排除 하고 있는 점도 注目할만 합니다.

아울러 仲裁地(Ort des schiedsrichterlicherlichen Verfahrens, le lieu de l'arbitrage)란 주된 仲裁節次 및 仲裁法判定이 그 곳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곳입니다. 現實의 審問 또는 證據調查의 節次가 다른 곳에서 행해지는 것은 무방합니다.<sup>10)</sup>

(2) 後見 · 援助의 事項과 節次 (a) 仲裁人の 選定(民訴789 · 80, 「試案」15 III · IV) 現行法에서는 選定의 訴에 의해 判決節次에서 選定되지만 「試案」에서는 決定節次에 의해 和 또한 不服申請은 認定되지 않습니다. (b) 證據調查(民訴795, 「試案」25) 現行法에서는 實際로 證據調查를 實施하는 것은 法院인지 仲裁人인지 明白하지 않았지만 「試案」에서는 明白히 仲裁人이라 되어 있습니다.<sup>11)</sup> (c) 執行力의 附與(民訴802, 「試案」38 · 41 · 48) 現行法에는 民訴802조만이 規定되어 있고 內國仲裁判定의 執行力附與에 관해서도 外國仲裁判定의 그에 관해서도 本條의 解結에 의해 對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執行判決을 구하는 訴訟이 必要하고 判決節次에서 審理됩니다. 이에 대해 「試案」에서는 內國仲裁判定과 外國仲裁判定에 관해 個別의 規定을 두었지만 그 實質的要件은 거의 同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뉴욕條約의 要件에 맞게 하였습니다. 또한 執行力附與를 받기 위해서는 執行許容宣言을 구하는 申請을 하면 되고 原則的으로 決定節次에서 審理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조금 詳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 仲裁인의 忌避(民訴798, 「試案」16) 現行法에서는 仲裁人の 忌避事由로서 여러가지 정해 놓고 있는데 「試案」에서는 「仲裁의 公定을 방해하는 事由」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것만으로 充分한가는 논의되고 있는 바입니다.<sup>12)</sup> 아울러 現行法에서는 法院에 대해 忌避의 訴訟을 提起해야 하는데 「試案」에서는 忌避申請을 하면 그만입니다.

## 2. 仲裁와 訴訟과의 關係

(1) 仲裁와 保全節次 保全處分에 관한 規定은 現行法에는 없지만 「試案」은 UNCITRAL模範法9조을 본받아 「當事者は 仲裁契約이 있는 경우에도 仲裁節次前 또는 仲裁節次中에 法院에 保全處分을 申請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였습니다. 이는 仲裁事件에 關聯하여 法院이 保全處分을 명하는 경우의 規定이고 仲裁法院 스스로 保全措置(중

10) 小山昇·仲裁法〔新版〕(1983)155頁 이하 참조.

11) UNCITRAL模範法·仲裁規則 기타의 立法例에 관해서는 「仲裁法試案解說」NBL 第25條 解說2 參照.

12) 예를 들면 「シンポジウム·仲裁」前掲(주3)133頁〔ハブシャイト〕.

간적 仲裁判定 interim award)를 내리는 경우와는 区別됩니다. 後者에 관해서는 「試案」 24조가 規定하고 있지만 본디 이와 같은 規定도 現行法에는 없고 UNCITRAL模範法 17조를 본받아 新設된 것입니다.

단 「試案」 24조 3항 「前2항의 命令은 執行力を 갖지 않는다」 라는 規定은 模範法 17條에는 없습니다.

法院의 保全處分과 仲裁法院의 保全措置와의 相偉와 相互關聯에 관해서는 別稿에 미루기로 하겠습니다.<sup>13)</sup>

(2) 仲裁契約이 있는데 訴訟이 提起되었을 때 現行法에는 特別한 規定이 없지만 獨逸의 實務와 같이 訴下判決을 내리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습니다.

「試案」 9는 決定으로 訴訟節次를 中止(stay)해야 한다고 하고 그에 관련하여 詳細한 具體的 节次를 정하고 있습니다. 9조 1~4항은 거의 美國법이나 英國법을 본받은 것입니다. 同조 5항은 UNCITRAL模範法 8조 3항과 同趣旨입니다.

### 3. 仲裁人

(1) 資格 仲裁人은 自然人에 한하는가 아니면 法人 其他의 團體라도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試案」 13조는 自然人에 한한다는 것을 宣言하였습니다.

(2) 人數 民訴 788조는 仲裁契約에 仲裁人選定에 관한 約正이 없을 때는 「當事者는 각各 一名의 仲裁人」을 選定한다고 정하고 있지만<sup>14)</sup> 「試案」 14조는 그 경우에는 仲裁人은 三人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UNCITRAL模範法 10조와 同一합니다.

(3) 辞任·解任 「試案」 17조는 UNCITRAL模範法을 본받아 辞任·解任에 관한 規定을 新設하고 있습니다.

(4) 忌避 忌避에 대해서는 忌避事由등의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前掲1(2)(d)) 여기서는 忌避節次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現行法에서는 忌避事由가 있다고 여겨지는 仲裁人에 대해 管轄地法 또는 簡法에 直接 忌避訴訟을 提起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民訴 805조 參照) 「試案」 16조에 의하면 忌避를 우선 仲裁人에 대해 申請하고 仲裁人이 申請을 却下하거나 決定을 하지 않을 때에 法院에 決定의 申請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關聯하여 예를 들면 ICC 規定에 의한 仲裁를 日本에서 행할 때에 ICC法院의 忌

13) 「仲裁法試案解說」 前掲(注11)제 10조 解說 4·松浦馨=日北野泰久·仲裁 保全手續(1989年3月·國際商事仲裁協會) 15頁이하·18子이하·27頁이하 [松浦] 參照.

14) [シンボジウム·仲裁] 前掲(注3) 110頁 [澤田]·小島=高柔·前掲(주2) 553頁 參照.

避에 관한 決定후에 또 다시 日本의 法院에 忌避申請을 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가 있음을  
니다. 아마도 不可能하다고 解釋해야 겠지요.<sup>15)</sup>

#### 4. 仲裁判定의 執行과 取消

(1) 仲裁判定의 執行에 관해서 現行 民訴802조에 의하면 執行判決의 訴라는 慎重한  
節次를 거쳐야만 하는데 「試案」에서는 原則적으로 決定節次에 의해 執行宣言을 받으면  
된다는 점은 앞서 (前掲(2)(C))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說明드리겠습니다.  
「試案」38조3항은 「執行許容의 宣言을 구하는 申請에 관해서는 法院은 口述辯論을 거치지  
않고 決定으로 裁判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審尋하여야 한다. 法院이 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口述辯論을 열었을 때에는 判結로서 裁判한다.」라고 하고 同條4항  
은 「仲裁判定의 許容宣言에는 假執行 선고를 부가해야 한다.」라고 하고 同條5항은 「執行  
許容을 宣言하는 決定에 대해서는 이의를 申請할 수 있다. 이의의 申請이 있었을 때에  
는 法院은 口述辯論을 명하여 判決로 裁判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試案」起草過程에서는 말하자면 原則決定主義 ·例外의으로 判決主義라는 실증안이  
아니라 民事保全法의 保全命令에 관한 節次에서 採用된 을決定節次方式도 檢討되었읍니다만  
結局 仲裁判定의 경우에는 外國仲裁判定도 包含되어 있고, 仲裁判定의 경우에는  
그 取消訴訟의 管轄이 日本이 아니고 執行許可의 節次가 事實上 그에 대신하게 되므로  
全部를 決定節次로 하면 節次保障을 너무 소홀이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折衷案을 採  
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獨逸民訴1042조, 1042조a, 1042조a, 1042조c의 立場과 같다.<sup>16)</sup>

(2) 仲裁判定取消의 要件 仲裁判定取消의 要件과 執行許容의 要件과는 링크시키는  
것이 通例이고 現行法도 「試案」도 例外가 아니다.<sup>17)</sup> 따라서 仲裁判定取消의 要件과 執行  
許容要件은 同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 [シンポジウム・仲裁] 後掲(注3)114~5頁 [澤田].

16) 筆者도 折衷案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는 多數設과 다르다. 私見에 의하면 을決定主  
義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法源은 필요에 의해(任意的)口述辯論을 열어 상담하지만 그 경  
우에도 결정으로 裁判하는 것으로 한다. 단 그 決定에 대해서는 이의가 아니라 抗告를 인  
정하는 것으로 하고 同日審級에 있어서의 重複審理를 피해야 한다. 決定節次에서도 口述辯  
論을 열어 審理하면 執行許容宣言의 節次로서는 충분하고 節次保障을 위해 하는 일도 없  
다고 생각한다.

단 같은 결정이면서 口述辯論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거친 경우에도 抗告하고 하는  
分類는 形式的平等을 尊重하는 日本에서는 통하기 힘들고 多數의 찬성을 얻을 수 없다. 그  
렇다면 上記의 折衷案으로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7) [シンポジウム・仲裁] 前掲(注3)117頁 [高橋].

(a) 民訴801 조1항第4 (仲裁節次에 있어서 當事者를 審尋하지 않았을 때), 第5 (仲裁判定에 理由를 인붙였을 때) 및 同條2항에 관해서 우선 1항第4의 當事者를 審尋하지 않은 경우에도 兩當事者가 合意했던 경우에는 取消理由가 되지 않는다는 2항의 規定은 基本權인 審尋請求權을 侵害할 염려가 있다는 指摘이 있읍니다만 「試案」에서는 물론 그러한 規定은 引繼되지 않았습니다. 1항第5의 理由를 붙이지 않을 때도 아무 말이 없읍니다. 이는 理由를 붙이지 않았을 때에는 「試案」<sup>34</sup>조의 仲裁判定의 訂定으로 處理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b) 民訴801 조1항第6(第420 조4호 내지 第8호의 경우에 있어서 再審의 訴를 許容하는 조건이 있을 때) 특히 仲裁判定의 基礎가 된 判決등의 變更된 경우이지만 公序로 處理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c) 取消訴訟의 提起期限 現行民訴803조, 804조에 의하면 예를 들면 仲裁人의 收賂라든지 偽證이 있으면 執行判決이 確定된 후에도 5年間 仲裁判斷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試案」에는 이러한 期間制限이 없읍니다만 그 대신에 41조3항에서 當事者가 仲裁判定의 正本을 受領한 날로부터 3개월을 經過한 후에는 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偽證이라든지 收賂하고 하는 것은 3개월以上 經過되어 明白해지는 것이 普通이므로 3개월로 遷斷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不合理합니다.<sup>18)</sup> 아마 「試案」41조와 民訴420조를 比較 對比하면서 「試案」4조에 기해 民訴422조를 準用해야 겠지요. 疑問은 있지만 그 결과 3개월 經過후에는 民訴420 조1항4호 내지 8호에서 들고 있는 事由에 한해서 5년 以內이면 (그理由가 3개월 經過후에 發生한 경우에는 그理由 發生後 5년 以內이면 된다) 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5. 國際仲裁와 準據法

國際仲裁란 무엇인가 하는 問題는 어려운 問題이지만 여기서는 우선 仲裁事件 當事者, 係爭物, 仲裁節次準據法등의 점에서 複數의 나라 또는 法秩序에 關係되고 있는 경우의 仲裁를 가리킨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試案」第7장 準據法 및 國際裁判管轄이 國際仲裁와 準據法에 관해 네개 規定을 두고 있는 것은 아주 새로운 規定입니다. 이 「試案」은 國內仲裁는 물론 日本을 仲裁地로 하는 國際仲裁에도 適用됩니다. 後者

18) [シンポジウム・仲裁] 前掲(注3)120~121頁 [高橋]・「仲裁法試案解説」・前掲(주11)第41條解説4(4) [谷口] 參照。

의 경우에 第7장의 規定이 適用되는 이치입니다.

(1) 仲裁契約의 準據法 仲裁契約의 效力이 問題가 되는 것은 仲裁契約이 있음에도 一方 當事者가 訴訟을 提起한 경우 상대방이 仲裁契約을 理由로 하는 妨訴抗辯을 提出할 때와 仲裁인의 面前節次에서 仲裁인의 權限 내지 仲裁付託의 範圍가 다투워질 때 등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法院이나 仲裁인이 仲裁契約의 成立이나 效力에 관해 判斷할 때 어느 나라의 法律에 의해 判斷하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試案」42조는 學述이나 國際條約의 傾向에 따라 우선 當事者の 指定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指定이 없으면 仲裁地, 仲裁地가 없으면 行爲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國際私法上의 通說에 의하면 行爲能力(契約締結能力)의 準據法과 契約의 準據法과는 別途로 정해지는 것이 原則이라고 하지만 UNCITRAL模範法34조2항(a)(i)은 兩者를 한꺼번에 規定하고 있고 「試案」42조는 거의 UNCITRAL模範法을 받아드린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仲裁契約締結能力도 42조에 의해 規制된다는 餘地가 充分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國際私法學者로부터는 疑問이 提起될 可能性도 크겠지요.<sup>19)</sup>

또한 仲裁契約의 方式의 準據法으로서는 抵觸法의 處理를 하지 않고 涉外實質法으로서의 「試案」7조가 適用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방안」43조항).

UNCITRAL模範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仲裁적격 내지 仲裁可能성의 準據法으로서는 종래 紛爭의 實體關係의 準據法說, 仲裁지법설, 仲裁契約의 準據法설, 承認국법설이 主張되고 있습니다만, 「試案」44조는 仲裁契約의 準據法과 法정지법을 累積적으로 適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sup>20)</sup>

(2) 仲裁節次의 準據法 仲裁節次의 準據法이라는 경우 仲裁法院이 實施하는 仲裁節次의 準據法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와 仲裁에 관해 援助 또는 協力하는 法院이 實施하는 节次나 仲裁判定取消訴訟節次의 準據法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로 나뉩니다. 後者에 관해 서는 同條항은 직접 言及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解釋이 갈라질 餘地가 있습니다.<sup>21)</sup>

(3) 仲裁의 判定基準 一般的으로 仲裁의 判定基準에 관해 特定의 合意가 없을 때에 法과 正義와 公平 그 외의 것중에 어느 것을 判定基準으로 하는가에 관해 現行法에는 規定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찌기 正義와 公評에 의해야 한다는 見解가 有力했지만 근년에 와서는 法에 의해야 한다는 見解가 支配的이라고 합니다.<sup>22)</sup>

19) 「仲裁法試案解說」前掲(注11) 第42條 解說4(4)〔澤木〕參照.

20) 「仲裁法試案解說」前掲(注11) 第44條 解說4〔澤木〕參照.

21) 「仲裁法試案解說」前掲(注11) 第45條 解說4〔澤木〕參照.

22) 小島=高柔·前掲(注2)548頁이하〔松浦〕參照.

(a) 民訴801 조1항第4 (仲裁節次에 있어서 當事者를 審尋하지 않았을 때), 第5 (仲裁判定에 理由를 인불였을 때) 및 同條2항에 관해서 우선 1항第4의 當事者를 審尋하지 않은 경우에도 兩當事者가 合意했던 경우에는 取消理由가 되지 않는다는 2항의 規定은 基本權인 審尋請求權을 侵害할 염려가 있다는 指摘이 있읍니다만 「試案」에서는 물론 그러한 規定은 引繼되지 않았습니다. 1항第5의 理由를 불이지 않을 때도 아무 말이 없읍니다. 이는 理由를 불이지 않았을 때에는 「試案」34조의 仲裁判定의 訂定으로 處理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b) 民訴801 조1항第6(第420 조4호 내지 第8호의 경우에 있어서 再審의 訴를 許容하는 조건이 있을 때) 특히 仲裁判定의 基礎가 된 判決등의 變更된 경우이지만 公序로 處理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c) 取消訴訟의 提起期限 現行民訴803조, 804조에 의하면 예를 들면 仲裁人の 收賂라든지 偽證이 있으면 執行判決이 確定된 후에도 5年間 仲裁判斷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試案」에는 이러한 期間制限이 없읍니다만 그 대신에 41조3항에서 當事者가 仲裁判定의 正本을 受領한 날로부터 3개월을 經過한 후에는 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偽證이라든지 收賂하고 하는 것은 3개월以上 經過되어 明白해지는 것이 普通이므로 3개월로 遞斷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不合理합니다.<sup>18)</sup> 아마 「試案」41조와 民訴420조를 比較 對比하면서 「試案」4조에 기해 民訴422조를 準用해야 겠지요. 疑問은 있지만 그 결과 3개월 經過후에는 民訴420 조1항4호 내지 8호에서 들고 있는 事由에 한해서 5년 以內이면 (그理由가 3개월 經過후에 發生한 경우에는 그理由 發生後 5년 以內이면 된다)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5. 國際仲裁와 準據法

國際仲裁란 무엇인가 하는 問題는 어려운 問題이지만 여기서는 우선 仲裁事件 當事者, 係爭物, 仲裁節次準據法등의 점에서 複數의 나라 또는 法秩序에 關係되고 있는 경우의 仲裁를 가리킨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試案」第7장 準據法 및 國際裁判管轄이 國際仲裁와 準據法에 관해 네개 規定을 두고 있는 것은 아주 새로운 規定입니다. 이「試案」은 國內仲裁는 물론 日本을 仲裁地로 하는 國際仲裁에도 適用됩니다. 後者

18) [シンポジウム·仲裁] 前掲(注3)120~121頁 [高橋]·「仲裁法試案解説」·前掲(주11)第41條解説4(4)〔谷口〕参照。

의 경우에 第7장의 規定이 適用되는 이치입니다.

(1) 仲裁契約의 準據法 仲裁契約의 效力이 問題가 되는 것은 仲裁契約이 있음에도 一方 當事者가 訴訟을 提起한 경우 상대방이 仲裁契約을 理由로 하는 妨訴抗辯을 提出할 때와 仲裁인의 面前節次에서 仲裁인의 權限 내지 仲裁付託의 範圍가 다투워질 때 등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法院이나 仲裁인이 仲裁契約의 成立이나 效力에 관해 判斷할 때 어느 나라의 法律에 의해 判斷하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試案」42조는 學述이나 國際條約의 傾向에 따라 우선 當事者의 指定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指定이 없으면 仲裁地, 仲裁地가 없으면 行爲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國際私法上의 通說에 의하면 行爲能力(契約締結能力)의 準據法과 契約의 準據法과는 別途로 정해지는 것이 原則이라고 하지만 UNCITRAL模範法34조2항(a)(i)은 兩者를 한꺼번에 規定하고 있고 「試案」42조는 거의 UNCITRAL模範法을 받아드린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仲裁契約締結能力도 42조에 의해 規制된다는 餘地가 充分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國際私法學者로부터는 疑問이 提起될 可能性도 크겠지요.<sup>19)</sup>

또한 仲裁契約의 方式의 準據法으로서는 抵觸法의 處理를 하지 않고 涉外實質法으로서의 「試案」7조가 適用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방안」43조항).

UNCITRAL模範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仲裁적격 내지 仲裁可能성의 準據法으로서는 종래 紛爭의 實體關係의 準據法說, 仲裁지법설, 仲裁契約의 準據法설, 承認국법설이 主張되고 있습니다만, 「試案」44조는 仲裁契約의 準據法과 法정지법을 累積적으로 適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sup>20)</sup>

(2) 仲裁節次의 準據法 仲裁節次의 準據法이라는 경우 仲裁法院이 實施하는 仲裁節次의 準據法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와 仲裁에 관해 援助 또는 協力하는 法院이 實施하는 节次나 仲裁判定取消訴訟節次의 準據法은 무엇인가 하는 問題로 나뉩니다. 後者에 관해 서는 同條항은 직접 言及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解釋이 갈라질 餘地가 있습니다.<sup>21)</sup>

(3) 仲裁의 判定基準 一般的으로 仲裁의 判定基準에 관해 特定의 合意가 없을 때에 法과 正義와 公平 그 외의 것중에 어느 것을 判定基準으로 하는가에 관해 現行法에는 規定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찌기 正義와 公評에 의해야 한다는 見解가 有力했지만 근년에 와서는 法에 의해야 한다는 見解가 支配的이라고 합니다.<sup>22)</sup>

19) 「仲裁法試案解說」前掲(注11)第42條 解說4(4)〔澤木〕参照。

20) 「仲裁法試案解說」前掲(注11)第44條 解說4〔澤木〕参照。

21) 「仲裁法試案解說」前掲(注11)第45條 解說4〔澤木〕参照。

22) 小島=高柔·前掲(注2)548頁이하〔松浦〕参照。

「試案」30조는 喉舌을 採用하고 있읍니다.

問題는 國際仲裁의 경우에 어느 나라의 法律에 의해 仲裁判定을 내리는가 라는 것입니다. 訴訟事件의 경우에는 當然히 法定地國의 國際私法에 의해 準據法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仲裁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訴訟의 경우와 같이 仲裁地國의 國際私法에 의해 決定된다는 見解도 있을테고, 當事者가 合意할 수 있고 그 合意가 없으면 仲裁인의 決定할 수 있다는 見解도 可能합니다.

### III. 「仲裁法試案」의 問題點

#### 1. 머릿말

「仲裁法試案」은 仲裁研究會가 10年以上의 세월을 들여 热心히 檢討를 거듭한 후에 作成한 것이고 比較法的 觀點에서도 立法政策的 視點에서도 充分한 論議를 거쳤습니다. 특히 貴重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民事節次法學者뿐만 아니라 國際私法學者, 商法學者, 仲裁實務家 여러분을 包含한 共同研究가 可能했다는 점입니다. 筆者 자신이 이들 분들에게 貴重한 생각하지도 못했전 意見이나 發想을 배운 적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 昨今의 仲裁 특히 國際商事仲裁는 日進月步하는 狀態이고 仲裁研究會의 研究에 손이 안닿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日本의 仲裁法改正은 빨라야 數年앞입니다. 따라서 그 후의 世界의 仲裁法改正의 움직임이나 比較的 손이 안닿던 研究領域 특히 아시아·太平洋地域의 仲裁의 研究를 補完하면서 「仲裁法試案」을 再檢討할 餘地와 必要性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筆者가 생却下는 問題點을 몇가지 指摘해 두고자 합니다.

#### 2. 問題點

(1) 國內仲裁와 國際仲裁를 區別하여 立法하는지의 與否 「試案」은 國內仲裁와 國際仲裁를 區別하지 않고 따라서 또한 國내仲裁節次와 國際仲裁節次를 分離하여 規定을 만든다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國內仲裁이거나 國際仲裁인가를 不問하고 共通의 規定이 適用된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습니다.

現行法이나 네덜란드법<sup>23)</sup>도 같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sup>24)</sup>, 스위스<sup>25)</sup>, 캐나다<sup>26)</sup>, 홍콩<sup>27)</sup> 등에서는 國內仲裁와 國際仲裁를 區別하고 國內仲裁節次와 國際仲裁節次를 分離하여 각각 別個의 規定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홍콩에서는 UNCITRAL模範法을 극히 적은 修正을 한 후에 그 國際仲裁節次規定으로서 繼受한다고 하는 方案이 취해졌습니다. 獨逸에서도 根本的 改正이 問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兩節次를 分離하는 立場이 優勢한 것 같습니다.<sup>28)</sup>

仲裁法을 制定하려고 할 때는 仲裁법의 주된 適用領域이 國際仲裁 특히 國際商事仲裁이면 外國人도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世界共通의・世界統一的 規定임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 國內仲裁만을 생각한다면 從來의 傳統이라든지 그 나라의 特殊事情을 急速히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國內仲裁節次와 國際仲裁節次를 分離하여 각각 別個의 規定을 두는 것으로 하고, 後者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可能한 한 UNCITRAL模範法을 모두 繼受한다는 方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다수의 나라가 이 方針을 취하지 않는 한 그 實效는 發生하지 않지만, 그 方向으로 다수의 나라가 나아간다고 하는 機運은 發生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이러한 方向으로 各國이 改正作業을 推進해 간다면 國際仲裁의 이용자는 仲裁結果의 豊測이 보다 쉽게 되고 보다 많이 利用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 때에 國際仲裁에는 소위 國際商事仲裁 이외에 말하자면 國際民事仲裁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包含되지만, 이 것도 國際節次規定下에 包括되는지의 與否 國際仲裁의 範圍를 어떻게 限定하는가등 慎重히 考慮해야 하겠지요.

(2) 條約과 仲裁法과의 關係 「試案」<sup>5)</sup>조는 「仲裁에 관해 條約에 別途의 規定이 있을 때에는 그 規定에 의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프사이트는 일찍이 「條約이 언제나 國內法에 優先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유리한 쪽을 優先適用할 수

23) 具幸雄・1986オランダ年 新仲裁法研究(1988年3月・國際商事仲裁協會) 및 그 년 掲記의 文獻参照.

24) 小島=高柔編・前掲(注2)529頁이하〔多喜〕 및 그 년 掲記의 文獻参照.

25) 石黒一憲・スイス新國際仲裁法について(1989・國際商事仲裁協會)・小島=高柔編・前掲(注2) 570頁이하〔柏木〕 등 參照.

26) 道垣内正人「カナタにおける商事仲裁法」JCA シャナル1987년3~5호・マク・ラロンテ(大貫雅春譯) 「カナタにおける商事仲裁の環境」 JCA シャナル1987년9호・ThomasNocke, DasRechtderSchiedsgerichtsbarkeit in Kanada(1988) 및 그 년 掲記의 文獻参照.

27) 松浦・前掲(注8) 및 그 년 掲記의 文獻参照.

28) K.H.Schwab, Das Uncitral-model law und das deutsche Recht, Fs für Heinrich Nagel zum 75. geburtstag(1987) S. 445, Vgl.auch Nocker, aaO. (Note 26)S.7.

있다고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批判하고 있는데 正當하다고 생각됩니다.<sup>29)</sup> 同教授는 또한 同條의 位置에 관해 제1장 總則보다는 第7장 準據法 및 國際裁判管轄 쪽이 適切하다고 합니다.<sup>30)</sup>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3) competence · competence의 問題 이 것도 하프사이트가 指摘한 問題點입니다. 「試案」20조1항은 「仲裁인은 부탁된 事件에 관해 仲裁判定을 할 權限을 갖는지의 與否를決定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同조3항은 「仲裁判定을 할 權限을 갖는다는 仲裁인의 決定은 仲裁判定取消訴訟에 의해 또는 執行許容의 宣言을 구하는 節次에 있어서 抗辯에 의해서만 다룰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仲裁判定을 할 權限을 갖는지 아닌지의 決定에 관해 이를 다투는 경우에 仲裁判定取消訴訟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는가라는 疑問이 發生한다고 同教授는 말합니다.

그에 의하면 스위스法에서는 仲裁判定을 할 權限을 갖는지의 與否에 관해서는 中間仲裁判定에 의해 判定하게 되어 있고, 이 中間仲裁判定에 대해서는 法院에 대해 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있고 仲裁判定取消訴訟까지 기다릴 必要는 없다고 합니다. 獨逸에서는 當事者는 法院에 대해 仲裁契約不存在確認의 訴訟을 提起하여 對抗할 수 있지만 스위스에서는 그러한 訴訟은 認定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必要가 없기 때문이겠지요.<sup>31)</sup>

이 점에 관해서는 「試案」起草科程에서도 論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위스式의 中間仲裁判定의 制度는 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것은 日本에서는 中間判決에 대한 獨立上訴를 可能하게 하는 制度를 認定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結局 當事者로서는 仲裁判定取消訴訟까지 기다려도 되지만 그 以前에 仲裁契約의 不存在 · 無效 · 履行不能 · 仲裁權限侵害 등의 確認의 訴訟을 提起할 수는 있습니다. 단 上記 確認의 訴訟을 本案訴訟으로 하여 상대방當事者에 대해 仲裁申請의 取下를 명하거나 仲裁인에 대해 仲裁節次의 中止를 명하는 假處分을 申請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고 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sup>32)</sup> 단 스위스식의 中間仲裁判断의 導入에 관해서는 再考의 價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29) 松浦鑑「外國仲裁判断の承認と執行の問題點」染野博士古稀・民社訴訟法の現代的 構築225頁(1989)参照。

30) [シンポジウム・仲裁] 前掲(注3)133頁[ハフシャイト]。

31) [シンポジウム・仲裁] 前掲(注3)134頁[ハフシャイト]。

32) [シンポジウム・仲裁] 前掲(注3)135~6頁[松浦]・「仲裁法試案とその解説」前掲(注11)第9條 解説4(5)参照。

(4) 訴訟의 仲裁의 消極的 權限의 抵觸 當事者가 訴訟을 提起하자 法院은 有效 仲裁契約이 있다고 하여 訴訟을 中止 또는 却下하고 다른 한편 仲裁申請을 하자 仲裁인은 仲裁契約은 無效라고 하여 仲裁申請을 却下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法院이 中止決定 또는 却下判決을 내렸을 때는 上訴하면 되겠지요. 仲裁人이 仲裁申請을 却下했을 떠에는 그 當事者는 상대방當事者를 被告로 하여(共同被告로서 仲裁인을 追加하는 것도 可能) 仲裁節次가 許容되는 점(仲裁契約의 有效, 履行可能, 仲裁權限의 存在등)의 確認訴訟을 提起하는 것은 可能하겠지요.

그러나 상대방當事者에 대해서 仲裁節次에의 를 應訴를 명하거나 仲裁인에 대해 仲裁節次의 進行을 명하는 假處分을 申請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겠지요. 또한 仲裁인에 대해 仲裁節次의 進行을 要求하는 通常給付訴訟도 許容되지 않겠지요. 상대방當事者에 대한 應訴를 要求하는 通常給付訴訟도 같습니다.<sup>33)</sup>

단 지금 말씀드린 것은 法文上 明白히 明示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解釋이 提起될 염려도 있습니다. 다른立法例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다 더 檢討를 가한 후에 明白한 條文을 두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5) 執行許容宣言節次와 仲裁判定取消訴訟의 關係의 調整 앞서 말씀드린데로 仲裁判定의 執行許容宣言의 要件과 仲裁判定取消訴訟의 要件과는 同一하기 때문에 兩節次간의 調整의 問題가 發生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執行許容宣言節次가 先行한 경우입니다. 그 節次에서 取消事由가 主張되었지만 排斥됐거나, 또는 取消事由를 主張하지 않은 체로 執行許容宣言이 내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후에 仲裁判定取消訴訟을 提起하여 다시금 取消事由를 主張할 수 있는가라는 問題입니다.

이에 대한回答은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決定으로 執行許容宣言이 내려진 경우에는 提起할 수 있지만 判決로 내려진 경우에는 提起할 수 없다는 것과 ②어느 것으로 執行許容宣言이 내려진 경우에만 提起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sup>34)</sup> 筆者は ①에 賛成하지만 解釋이 나뉠 可能성이 있으므로 確實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反對의 경우로 仲裁判定取消訴訟이 先行하고 執行許容宣言節次가 後續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通常의 경우에는 既判力의 問題로서 處理할 수 있습니다. 問題는 債務者側이 仲裁判定取消訴訟의 出訴期間(「試案」41조3항)을 도과한 후에 債權者가 執行許容

33) 「仲裁法と その 試案解説」前掲(注11)第9條 解説4(5)後半参照。

34) [シンボジウム・仲裁] 前掲(注3) 118頁〔高橋〕・「仲裁法試案とその解説」前掲(注11)第1條 解説4(4)参照。

宣言의 申請을 하게 된 경우에 債務者는 이미 出訴期間이 지난 取消事由를 當該執行許容宣言節次中에 主張할 수 있는 것입니다.

仲裁研究會에서는 主張할 수 있다고 解釋하고 있습니다.<sup>35)</sup> 筆者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債務者는 더이상 仲裁判定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없지만 執行許容宣言節次中에서는 取消事由를 主張못할 리 없습니다. 그 主張을 먹는 先行하는 確定判決을 전혀 存在하지 않음으로 그 主張을 막는 既判力도 存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調停前置主義 調停이라는 것에 대한 思考方式은 歐美, 中國, 日本, 그외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개 아시아諸國에 있어서는 調停에 대해 親近感을 갖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日本의 仲裁법에서도 調停을 어떠한 形態로든 받아 들인立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法律上 당연히 調整前置主義를 취하는 것과 같은 일은 생각할수 없겠지요. 아마 홍콩仲裁令이 採用하는 것과 같은 雙方當事者의 特定의 合意에 의해 仲裁前에 調停을前置하는 것이可能한 것으로 하여 그 경우의 節次를 누가 보아도 無理가 없는 程度의 것으로 規定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 경우에 主義해야 할 점으로 두가지를 指摘해 두고자 합니다. 하나는 홍콩仲裁令도充分히 意識한 것으로, 調停을 하게 되면 各當事者와 調停人은 個別의으로 接觸하는 것이可能하게 되는데 그 때 内密하게(confidential)調停人이 取得한 情報가 상대방當事者가 모르는 사이에 仲裁判定에 影響을 미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점에서 結局에는 調停이 不調하게 되면 調整人이 内密하게 取得한 情報에 관해서는 仲裁節次에 있어서重要한 것은 모두 상대방當事者에게 開示해야만 한다 라는 것입니다(홍콩仲裁令2B조(3) 항).

또 하나는 爭點의 再確認이라는 것입니다. 先行하는 調停節次에서는 그 目的이 圓滿한 自主的 解決에 있으므로 상대방의 主張事實을 하나 하나 다투는 것은 피하는 일도 있고, 스스로 主張하는 사실도 調停의 目的에서 취사할 餘地가 있음은 當然합니다. 그 때문에 調整節次가 不調하게 되어 仲裁節次에 移行하게 되면, 새롭게 仲裁判定을 구하는 것을前提로 하여 상대방의 主張事實에 관해 어느 範圍에서 다투는지 스스로의 主張事實로서 어떠한 事實을 提出하는가를 確認한 다음에 爭點整理를 다시 해야 합니다.<sup>36)</sup>

35) [シンポジウム·仲裁] 前掲(注3)118頁〔高橋〕。

36) 松浦·前掲(注8)121頁以下 參照。

「試案」에서는 調停의 導入에 관해 전혀 言及하고 있지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諸點을 考慮하면서 導入을 檢討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7) 其他 그 외에 保全處分(「試案」10조)이나 保全措置(「試案」24조)에 관한 規定은 너무 簡潔하고 兩者의 關係도 반드시 明確하지 않은 傾向이 있음으로 보다 詳細한 規定을 檢討해야겠지요. 단 이 점에 관해서는 別稿<sup>37)</sup>를 採用합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이 程度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 IV. 結語

以上으로 「『仲裁法試案』의 特徵과 問題點」이라는 筆者の 講演을 마치고자 합니다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繼續 해서 仲裁研究會를 基盤으로 하여 仲裁의 研究 특히 아시아의 仲裁의 研究에 몰두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아주 最近에 通產省의 周旋으로 國際商事仲裁시스템高度化研究會가 發足하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부터 名古屋大學法學部에 아시아·太平洋地域研究프로젝트팀이 組織되어 法律·政治에 걸쳐 廣範한 研究活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研究의 一部로서 筆者は 아시아의 仲裁의 研究를 擔當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韓國의 仲裁에 관해서도 큰 關心을 갖고 있고 앞으로 韓國의 仲裁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調査·研究할 생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教示와 支援을 부탁드릴 생각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日本의 仲裁에 관해 調査·研究하시거나 日本의 仲裁에 대한 意見이나 要望이 있으시다면 우리들은 真心으로 환영하고 協力を 아끼지 않을 것이며 허심탄회하게 받아 드릴 생각이므로 기坦 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今後는 國際공동研究가 추진되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한국과 日本의 공동研究가一步라도 이보라도 진전하기를 바라면서 筆者の 강연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完]

37) 松浦 = 日北野·前掲 (注13)1頁이하 [松浦] 參照.